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공사사업의 양도나 법인 간 합병에 따른 지위승계 시 전기공사사업 양도의 신고 등이 수리된 때에 지위가 승계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공사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공사사업자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사업자단체에 양도 또는 합병 무효판결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사업자단체는 승계인과 피승계인에 관한 정보 및 판결 확정일 등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발급에 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력수첩을 전자카드형 경력수첩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74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이륜자동차의 소형란 및 중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1호가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를 “그 밖에 초소형화물차 및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로 한다.

배기량이 10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초과 26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
------------------------------------	---

별표 21의2 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주)제2호1) 및 2) 외의 부분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을 “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자동차를 직접 전시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을”로 하며, 같은 주)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5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정비 업무, 자동차검사 업무 또는 성능·상태점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춘 사람

별지 제8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매매업 전시기설의 연면적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시기설에 대하여는 별표 21의2 제1호 주)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전시기설
2.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마목에 따른 매매장을 용도로 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전시기설

[별표 22]

성능·상태점검자의 시설·장비기준등(제120조제2항관련)

구 분	자 격
성능점검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정비 업무, 자동차검사 업무 또는 성능·상태점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설·장비	1. 핏트 또는 리프트 2. 자기 진단기(스캐너) 3. 도막측정기 4. 카레이지작기 5. 청진기 6. 멀티테스터 7. 타이어답게이지 8. 배터리전압측정기 9. 비중계 10. 가스누출감지기 11. 배기가스측정기(매연측정기,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12. 절연저항시험기, 절연장갑·절연화·절연매트·보안경 및 앞치마 등의 보호장구(고전원전기장치 항목을 점검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비고

1. 성능·상태점검자가 위의 기준을 갖추어 성능·상태 점검을 하려는 경우 관할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1개의 시설·장비로 2 이상의 성능·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때에는 다른 품명의 시설·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성능·상태점검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설·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일 것
나. 성능·상태점검 장소가 정비업 사업장 또는 이에 맞닿은 장소일 것

[별지 제82호서식]

(1/5쪽)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 자동차가격조사·산정 선택)

제 호 ※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은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자동차 기본정보

(가격산정 기준가격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① 차명	(세부모델 :)		② 자동차등록번호			
③ 연식	④ 검사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⑤ 최초등록일	⑦ 변속기 종류		[]자동 []수동 []세미오토 []무단변속기 []기타()			
⑥ 차대번호						
⑧ 사용연료	[]가솔린 []디젤 []LPG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 []기타					
⑨ 원동기형식	⑩ 보증유형		[]자가보증 []보험사보증		가격산정 기준가격	
					만원	

자동차 종합상태

(색상, 주요옵션,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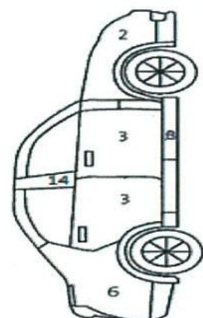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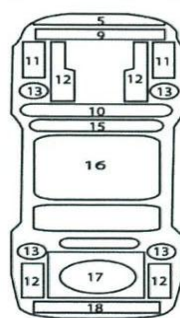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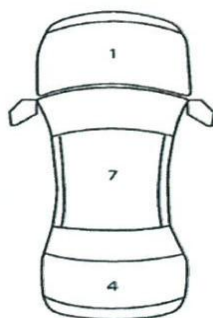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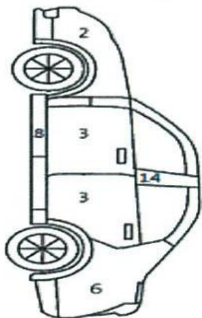
⑪ 사용이력	상 태		항목 / 해당부품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양호	[]불량	현재 주행거리 []		만원			
	[]많음	[]보통 []적음			만원			
차대번호 표기	[]양호	[]부식	[]훼손(오손)	[]상이	[]변조(변타)	[]도말	만원	
배출가스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매연		%, ppm, %				만원	
튜닝	[]없음	[]있음	[]적법	[]불법	[]구조	[]장치	만원	
특별이력	[]없음 []있음		[]침수 []화재				만원	
용도변경	[]없음 []있음		[]렌트 []영업용				만원	
색 상	[]무채색 []유채색		[]전체도색 []색상변경				만원	
주요옵션	[]있음 []없음		[]썬루프 []내비게이션 []기타				만원	
리콜대상	[]해당없음 []해당		리콜이행		[]이행 []미이행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상태표시 부호 : X (교환), W (판금 또는 용접), C (부식), A (흠집), U (요철), T (손상)

※ 하단 항목은 승용차 기준이며, 기타 자동차는 승용차에 준하여 표시



⑫ 사고이력(유의사항 4 참조)		[]없음 []있음	단순수리	[]없음 []있음
⑬ 교환,판금 등 이상 부위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
외판부위	1랭크	[] 1. 후드 [] 2. 프론트펜더 [] 3. 도어 [] 4. 트렁크 리드 [] 5. 라디에이터서포트(볼트체결부품)		만원
	2랭크	[] 6. 쿼터패널(리어펜더) [] 7. 루프패널 [] 8. 사이드실패널		
주요골격	A랭크	[] 9. 프론트패널 [] 10. 크로스멤버 [] 11. 인사이드패널 [] 17. 트렁크플로어 [] 18. 리어패널		
	B랭크	[] 12. 사이드멤버 [] 13. 휠하우스 [] 14. 필러패널 ([]A, []B, []C) [] 19. 패키지트레이		
	C랭크	[] 15. 대쉬패널 [] 16. 플로어패널		

210mm×297mm [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2/5쪽)

자동차 세부상태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⑭ 주요 장치	항목 / 해당부품		상 태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
자기진단	원동기		[]양호 []불량	만원
	변속기		[]양호 []불량	
원동기	작동상태(공회전)		[]양호 []불량	만원
	오일누유	실린더 커버(로커암 커버)	[]없음 []미세누유 []누유	
		실린더 헤드 / 개스킷	[]없음 []미세누유 []누유	
		실린더 블록 / 오일팬	[]없음 []미세누유 []누유	
	오일 유량		[]적정 []부족	
	냉각수 누수	실린더 헤드 / 개스킷	[]없음 []미세누수 []누수	
		워터펌프	[]없음 []미세누수 []누수	
		라디에이터	[]없음 []미세누수 []누수	
		냉각수 수량	[]적정 []부족	
	커먼레일		[]양호 []불량	
	변속기	자동변속기 (A/T)	오일누유	
오일유량 및 상태			[]적정 []부족 []과다	
작동상태(공회전)			[]양호 []불량	
수동변속기 (M/T)		오일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기어변속장치	[]양호 []불량	
		오일유량 및 상태	[]적정 []부족 []과다	
		작동상태(공회전)	[]양호 []불량	
동력전달		클러치 어셈블리		[]양호 []불량
	등속조인트		[]양호 []불량	
	추진축 및 베어링		[]양호 []불량	
	디퍼렌셜 기어		[]양호 []불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3/5쪽)

조향	동력조향 작동 오일 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만원
	작동상태	스티어링 펌프	[]양호 []불량	
		스티어링 기어(MDPS포함)	[]양호 []불량	
		스티어링조인트	[]양호 []불량	
		파워고압호스	[]양호 []불량	
		타이로드엔드 및 볼 조인트	[]양호 []불량	
제동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오일 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만원
	브레이크 오일 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배력장치 상태		[]양호 []불량	
전기	발전기 출력		[]양호 []불량	만원
	시동 모터		[]양호 []불량	
	와이퍼 모터 기능		[]양호 []불량	
	실내송풍 모터		[]양호 []불량	
	라디에이터 팬 모터		[]양호 []불량	
	윈도우 모터		[]양호 []불량	
고전원 전기장치	충전구 절연 상태		[]양호 []불량	만원
	구동축전지 격리 상태		[]양호 []불량	
	고전원전기배선 상태 (접속단자, 피복, 보호기구)		[]양호 []불량	
연료	연료누출(LP가스포함)		[]없음 []있음	만원

자동차 기타정보

(이 항목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항 목					가격조사·산정액
수리필요	외장	[]양호 []불량	내장	[]양호 []불량	만원
	광택	[]양호 []불량	룸 크리닝	[]양호 []불량	
	휠	[]양호 []불량	운전석	[]전 []후 / 동반석 []전 []후 / []응급	
	타이어	[]양호 []불량	운전석	[]전 []후 / 동반석 []전 []후 / []응급	
	유리	[]양호 []불량			
기본품목	보유상태	[]있음 []없음 ([]사용설명서 []안전삼각대 []잭 []스패너)			

최종 가격조사·산정 금액 만원

이 가격조사·산정가격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을 바탕으로 한 기준가격과
([]기술사회, []한국자동차친단보증협회) 기준서를 적용하였음

⑮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성능·상태점검자	
	가격·조사산정자	

유의사항

※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 자동차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격조사·산정 부분 제외)에 기재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하여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 자동차매매업자는 매수인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매수인이 성능·상태점검자가 가입한 책임보험 등을 통해 별도로 배상받는 경우는 제외)
 - 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일, 보증거리는 ()킬로미터로 합니다.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
 - 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때 현행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국토교통부 고시)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동 보증범위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리콜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거짓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성능·상태점검자(자동차정비업자)가 거짓으로 성능·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㉔ 사고이력 인정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 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
(후드, 프론트펜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성능·상태점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 체크항목 판단기준(예시)
 - 미세누유(미세누수): 해당부위에 오일(냉각수)이 비치는 정도로서 부품 노후로 인한 현상
 - 누유(누수): 해당부위에서 오일(냉각수)이 맺혀서 떨어지는 상태
 - 부식: 차량하부와 외판의 금속표면이 화학반응에 의해 금속이 아닌 상태로 상실되어 가는 현상(단순히 녹슬어 있는 상태는 제외합니다)
 - 침수: 자동차의 원동기, 변속기 등 주요장치 일부가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 상태
 - 현재 주행거리: 성능·상태점검 당시 해당 차량 주행거리계의 주행거리를 기록하되, 기록한 주행거리가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부터 받은 주행거리(주행거리계 교체 정보 포함)보다 적은 경우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 이를 적어야 합니다.

※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 가격조사·산정자는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격조사·산정 부분 한정)에 적힌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일, 보증거리는 ()킬로미터로 합니다.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 매매업자는 매수인이 가격조사·산정을 원할 경우 가격조사·산정자가 해당 자동차 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결과를 이 서식에 적도록 한 후, 반드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매매업자는 가격조사·산정자에게 가격조사·산정을 의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가격조사·산정 비용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가격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가격으로 조사·산정하되, 기준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사회에서 발행한 기준서를,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발행한 기준서를 각각 적용하여야 하며, 기준가격과 기준서는 산정일 기준 가장 최근에 발행된 것을 적용합니다.
- 특기사항란은 가격조사·산정자의 자동차 성능·상태에 대한 견해가 성능·상태점검자의 견해와 다를 경우 표시합니다.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이란

※ "가격조사·산정"은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고차 가격의 적절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법령에 의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전문 가격조사·산정인이 객관적으로 제시한 가액입니다. 따라서 "가격조사·산정"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서비스이며, 가격조사·산정 결과는 중고차 가격판단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은 없고 소비자의 구매여부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점검 장면 촬영 사진

(앞 면)

(뒷 면)

서명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중고자동차성능·상태를 점검, []자동차가격조사·산정)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

(인)

자동차가격조사·산정자

(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고지자

자동차매매업소 (인)

본인은 위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 선택)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수인

(서명 또는 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전시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서 정비·성능점검 시설을 삭제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성능점검장 개설 활성화를 위하여 성능·상태점검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기준을 종전에는 성능점검책임자와 성능점검원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한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사람 1명으로 완화하고, 성능·상태점검 장소가 정비업 사업장 또는 이에 맞닿은 곳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시설·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친환경 중고차 매매가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여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친환경차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고,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에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며, 이륜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관한 차량 종류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보건복지부령 제73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의2 제1호가목의 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항공기의 기령(機齡)이 15년 이하일 것
- 2) 8인승 이상으로서 동시에 2명의 환자 이송이 가능할 것
- 3) 최대 이륙중량이 2,500킬로그램 이상일 것
- 4) 항속거리가 600킬로미터 이상일 것
- 5) 쌍발엔진(Twin Engine)을 장착할 것

※ 2)부터 4)까지에 따른 기준은 「항공기등록규칙」 제20조제1항제6호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의 내용으로 판단한다.

별표 15의2 제1호나목의 내용란 4)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의 내용란 4) 중 “제세동기”를 “심장충격기”로 한다.

- 4) 조종실 음성기록장비(CVR) 및 비행자료 기록장비(FDR)
- 6) 항공기의 비상 착수를 위한 부양 기구(Flotation Device for Helicopter Ditching). 다만, 해상 운항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서 운용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